

[일련번호 : 58]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방식은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르면,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개별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일 10<sup>m³</sup>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수회에 걸친 행정행위의 누적 오수발생량이 1일 10<sup>m³</sup>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별 1일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 포함)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되,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공조실·캐노피 등은 오수발생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고시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전·후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 4건 49,962,380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세대당 2인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2인으로 산정하여 오수발생량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부과하였다.

둘째, 신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은 해당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공조실·캐노피 등의 연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축 건축물 소매점의 바닥면적을 과다 산정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셋째, 2024. 5. 3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종합병원의 1일 오수발생량 기준이 m<sup>3</sup>당 20리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 1. 8.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표시 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개정 고시 시행 이후임에도 종전 기준인

m<sup>2</sup>당 40리터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함으로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부과하였다.

[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착오 산정내역

연번	과세대상	납세자	부과일자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원)			비고
				당초금액	적정금액	과다부과액	
1			2023.2.10.	50,141,720	49,226,520	915,200	1호1거실 산정오류
2			2024.1.25.	12,372,510	11,361,950	1,010,560	소매점 면적 산정오류
3			2025.1.8.	76,716,210	28,768,550	47,947,660	종합병원 산정요율 오류
4			2025.2.13.	12,478,860	12,389,900	88,960	1호1거실 산정오류
	총 계					49,962,380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다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9,962,380원에 대하여 환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산정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